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대의원회 규정

제정 2025.07.02.

목 차

제1장 총칙

목적 | 대의원 | 의무 | 개정

제2장 의장단

구성 | 지위 | 업무 | 임시의장단

제3장 회의

원칙 | 의장단의 역할 | 소집 | 의사정족수 | 회의 순서 | 회의 개최 | 안건 발의 | 안건 조정 | 신속처리 안건 | 안건 심의 | 표결 및 의결 | 안건의 폐기 | 회의록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규정을 바탕으로,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원칙 그리고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학생 자치의 대표 기구로서 대의원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의원

1. 대의원은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장단(학생자치회장, 1학년장, 2학년장, 3학년장)을 포함한다.
2. 대의원은 학생자치회 및 기숙사자치회, 그리고 각 학급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학급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3. 대의원은 본교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재학 중에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휴학 등으로 재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은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3조 의무

1. 대의원은 각 공동체의 대표로서 재학생의 의견을 성실히 대변해야 한다.
2. 대의원은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필요시 이를 안건으로 발의해야 한다.
3. 대의원은 대의원회 회의 내용과 의결 사항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4. 대의원은 대의원회 회의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

제4조 개정

1. 대의원회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대의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의사정족수는 대의원회 재적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3. 개정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석 대의원의 $\frac{2}{3}$ 를 초과하는 찬성이 필요하다.

제2장 의장단

제5조 구성

1.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2. 의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부의장은 학생자치부회장이 맡는다.

제6조 지위

1.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운영을 책임진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대의원회 회의의 개최, 진행 및 마무리를 돋는다.

제7조 업무

1. 의장은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진행한다.
2. 의장은 대의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3. 의장은 대의원회 회의의 의결 사항을 공포한다.
4. 의장은 대의원회 회의의 의결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 의장은 총무기획부가 작성한 대의원회 회의록을 대의원회와 재학생 전체에게 공개한다.

제8조 임시의장단

1. 의장직이 공석인 경우, 부의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대의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2. 임시의장은 의장의 권한을 모두 행사한다.
3. 부의장직이 공석이거나 임시의장직을 맡은 경우, 3학년장, 2학년장, 1학년장 순으로 임시부의장직을 맡아 대의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4. 임시부의장은 부의장의 권한을 모두 행사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원칙

- 회의 공개의 원칙: 안건 공고, 방청, 회의 내용 및 회의록 공표를 한다.
-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 이상의 대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야만 대의원회는 회의 기능과 의결권을 가진다.
- 발언 자유의 원칙: 대의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부여받으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그 발언은 제지당하지 않는다. 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은 대의원의 발언을 유보할 수 있다.
- 투표의 원칙: 대의원은 재학생의 대표자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모든 표결은 비밀투표를 포함한 선거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 다수결의 원칙: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원 책임의 원칙: 대의원은 재학생의 대표자로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지며, 모든 의사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0조 의장단의 역할

-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반 권한을 갖는다.
- 의장은 대의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 부의장은 회의 및 의결 과정에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11조 소집

- 의장단은 회의 소집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대의원회에 적어도 회의 시작 12시간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 회의 장소
 - 회의 일시
 -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 회의의 개최 및 준비는 의장단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중대한 사안이 회의의 가치보다 더 우선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장은 회의 장소와 일시를 긴급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 제3항에 대해 의장단은 회의 시작 최소 2시간 전까지 변경 사항 및 사유를 대의원회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

제12조 의사정족수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순서

- 회의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개회 선언

2. 재적 대의원 수 및 출석 대의원 수 확인
 3. 안건 상정 및 회의 순서 공지
 4. 이전 회의 안건 처리 경과 보고
 5. 안건 논의
 6. 안건 표결 및 의결
 7. 회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낭독
 8. 폐회 선언
2. 위 회의 순서는 의장단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4조 회의 개최

1. 회의는 원칙적으로 학기당 2회 개최하며, 1회 고사와 2회 고사 이전에 각각 1회씩 개최한다.
2. 의장단이 논의 및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3. 제14조 제2항에 따라 추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의장단은 회의의 목적 및 개최 사유를 명확히 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안건 발의

1. 재학생은 누구나 안건 안의 형식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2. 안건 안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방법은 의장단이 재학생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3. 안건 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안건 제목
 2. 발의자 학번 및 성명
 3. 공동 발의자 학번 및 성명
 4. 안건의 제안 배경 및 제안 사유
 5. 기대 효과 및 실행 방안
4. 제출된 안건 안은 의장단이 접수하며, 접수된 안건 안은 대의원회에 공유해야 한다.
5. 제출된 안건 안은 의장단이 내용 검토와 안건 조정 절차를 거쳐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6.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상정하지 않는다.
7. 안건 안의 내용이 학생 규정 또는 그 하위 규정에 어긋날 경우, 의장단은 해당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 안건 조정

1. 학생자치회는 접수된 안건 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규정 적합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 조정을 진행한다.
2. 안건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필요시, 발의자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확인한다.
 2. 관련 부서나 학생 기구, 대의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3.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의자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한다.
3. 조정된 안건은 원안 또는 수정안의 형태로 회의에 상정되며, 학생자치회는 조정 과정과 주요 쟁점에 대해 함께 보고해야 한다.
4. 안건 조정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완료돼야 하며, 기한을 넘긴 안건은 차후 회의로 연기될 수 있다.
5. 학생 자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학생자치회는 공개 설문 및 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 신속처리 안건

1. 의장단은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의 $\frac{2}{5}$ 초과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제16조의 안건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의장단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3. 규정 개정, 주요 인사 관련 사항 등 충분한 숙의가 요구되는 사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신속처리 안건은 일반 안건보다 우선하여 논의하며, 그 결과는 회의록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제18조 안건 심의

1.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안건 발의자의 제안 취지 설명
 2. 학생자치회의 안건 조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보고
 3. 대의원의 질의 및 발의자의 답변
 4. 대의원 간 의견 개진 및 토론
 5. 표결
2. 의장은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표결을 보류하거나 안건을 차후 회의로 이월할 수 있다.
3. 발언은 의장의 발언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며, 의장은 모든 대의원에게 균형 있고 공정한 발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표결 및 의결

1. 표결은 원칙적으로 무기명으로 진행하되, 의장단의 판단에 따라 거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대의원 1인 이상이 무기명 표결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무기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안건의 가결 요건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다.
 1. 일반 안건
 -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 및 재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
 2. 규정 개정을 포함한 중대한 사안
 - 재적 대의원 $\frac{2}{3}$ 초과 출석 및 재석 대의원 $\frac{2}{3}$ 초과 찬성

3. 표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표결의 경우 그 방식과 결과를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4. 표결 결과는 의장이 즉시 공표하며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20조 안건의 폐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자동 폐기한다.
 1. 회기 내 논의되지 않고 대의원회 임기가 종료된 안건
 2. 회의 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안건
 3. 의장단이 정당한 사유로 회의 상정 불가 판단을 내린 안건
2. 폐기된 안건은 동일 학기 내 재상정할 수 없으며, 이후 회기에서 재상정을 원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 회의록

1.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록 작성자 성명
 3. 회의 참석자 및 출석 대의원 수
 4. 논의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5. 주요 발언 요약
 6. 표결 방식 및 결과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신속처리 안건이 있다면 제17조 제4항에 따라 회의록에 별도로 기재한다.
3.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학생자치회 총무기획부가 작성하며, 총무기획부 부원이 공석일 경우 의장이 지정한 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4.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재학생에게 공개해야 한다.
5. 회의록에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경우, 의장은 일부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요약본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8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